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05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6. 11.  
발 의 자 : 방종영, 서정우의원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의 법률 조문번호 및 주요용어·표현 등이 전부개정(2007.5.11, 법률 제8423호)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”로 변경(안 제1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입법예고 : -
- 다. 개정조례안 : 별첨
- 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4조” 를 “제62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--제62조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</p>